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01668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정수정

피고, 항소인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민현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23.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10135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양도

1) B는 2017. 6.경 E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회 3필지 지상 주소유소 및 관련시설물 일체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2) B는 2018. 4.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유류대금채권

1) 원고는 2017년 10월부터 B에 유류를 공급하여,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235,156,000원(=일산점 미지급 유류대금 114,502,000원+김포점 미지급 유류대금 120,654,000원)의 유류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의 대표이사 C는 2018. 10. 22.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채무 합계가 267,980,000원(정산 전)이며, 그 중 150,000,000원은 2018. 10. 31.까지, 나머지 117,980,000원은 2018.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는 B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행사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2017. 6. 19.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을 하는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와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확정 카드매출채권 양도에 따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F에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F로부터 위 자산양수도 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만, 피고는 권리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훨씬 이전인 2017. 6. 19.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9,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선릉중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 13, 14호증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및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인부의견을 부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이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문서의 진정성립 의견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부의견의 변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주식회사 H 선릉중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내용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서증들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보는 을 제2 내지 8호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가. F의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1) F는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카드매출가맹점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카드매출채권의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등을 목적으로 2015. 1. 22. 설립되었다.

2) F는 주식회사 H 선릉중앙지점(이하 ‘H 선릉지점’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방식을 마련하였다.

① 카드매출가맹점은 카드매출채권을 H에 신탁하고, H는 매 영업일마다 추심계좌로 회수된 카드대금에서 조세와 비용, 신탁 보수 등을 제외한 남은 수익을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최초의 제1종 수익자는 위탁자인 카드매출가맹점으로 한다. ② F는 카드매출가맹점으로부터 위 제1종 수익권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가로 매 영업일에 일정한 할인율을 공제한 금액을 카드매출가맹점에게 지급한다. ③ F는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I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제1종 수익권을 I에 양도하며, I은 수탁자인 H에게 제1종 수익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한다.

3) F와 B 사이의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 등

가) B는 F가 마련한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을 이용하여 카드매출채권을 유동화시켜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B는 2017. 6. 19. F와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B는 카드매출채권을 H에 신탁양도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제1종 수익권을 F에 양도한다. F는 매 영업일에 ‘양수도대금 지급일 전일 0시까지의 확정된 카드매출금

액’에서 일일 할인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B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양수도대금을 지급한다.

다) 또한, B는 같은 날 H 선릉지점과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B는 H에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 카드매출채권을 신탁하고, H는 매 영업일마다 추심계좌로 회수된 카드대금에서 조세 및 비용, 신탁 보수 등을 제외한 남은 수익을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제1종 수익권의 수익자는 최초에는 위탁자이나,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1종 수익권을 F에 매도하며, F는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I에 부담하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1종 수익권을 I에 다시 양도한다.

나. 피고의 계약 인수

1) F는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I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7년 8월 무렵 F와 I과의 여신거래약정이 종료되었다.

2) 이에 F의 이사 J은 2017. 8. 2.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 무렵 F는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4) B는 2017. 8. 24. I, K, H, F에게, ‘금전채권신탁계약상 F의 지위를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며,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최종 수익자인 I이 K에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제1종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의 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와 F 간에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F가 B의 승낙을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에 B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F에 양도하였는지를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7. 6. 19. B와 F는 특약으로, B는 ‘아직 확정된 카드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미확정 매출’에 대하여도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정산은 확정 카드매출금에 대한 양수도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며, 미확정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B는 2017. 6. 1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제3 호증)을 F에 교부한 사실, 또한 B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F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F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을 제5호증),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한 조치가 없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각서(을 제7호증), 임대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대인 명의의 채권양도 승낙서 양식(을 제8호증) 등에 도장을 날인하여 F에 교부한 사실, 그러나 그 당시 B나 F는 임대인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B는 H에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 신용판매대금채권을 신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장래의 카드매출채권도 신탁대상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에서는 수익권의 매매대금은 ‘양수도대금 지급일 전일 0시까지의 확정된 카드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양수도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B로서는 장래 발생할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을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반면 장래 발생할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 지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신용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어서 F로서는 그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B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통지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B나 F가 임대인인 E에게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는 F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후 한참이 지난 후인 2018년 4월에야 B로 하여금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채권양도통지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2018년 4월경 B의 카드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담보권을 실행해야 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와 F는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도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B와 F 사이의 2017. 6.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계약 체결 경위나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미확정 카드매출채권 양수도대금 회수에 대한 담보조로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동산의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채권은 담보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F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한다면,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을 F가 B로부터 미확정 카드매출채권 양수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채권양도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지스제일차는 정지조건부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에 기한 계약상 지위 역시

인수하였는지를 본다.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과 이 사건 특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체결일자,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인 점, F는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계약상 지위 역시 일체로서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로 피고에게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계약상 지위 역시 인수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B가 2018. 4.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이 사건 수익권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 지위 이외에도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특약에 의한 계약상 지위와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 등도 모두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 역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은 미확정 카드매출채권 양수도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담보라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F에 양도되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는 피고에게 이전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4. 2. B와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 하여금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4월경 B는 카드매출 실적이 떨어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고는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행위나 채권양도통지행위는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절차로서 이를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만약,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을 정지조건부 채권양도라고 보는 경우에는, 미확정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양도는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7. 6. 19.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도 처분행위 당시인 위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그런데 원고는 선행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에야 비로소 B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바, 위 2017. 6. 19. 당시에는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은 성립되지도 않았고 또 B와 원고 사이에 유류대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이므로 F나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F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5018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채권양도와 원고의 가압류 간의 우열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2018. 4. 2.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와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와 B 사이에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선행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양도담보권자인 F에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2.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

목 록

B와 E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 외 3필지에 관하여 2017년 6월경 체결된 임대차계약
에 따라 B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끝 .

- 1) 정 지조건부 채권양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그 사행행위 여부는 처분행위당시인 채권양도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